

○ 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(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(구 하나은행)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| 구 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
| 약관, 약정서명 | 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(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) | 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(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,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(구 하나은행)) | 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합병에 따라 전산통합 전까지 (구)하나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의 구분을 위해 약정서명에 (구 하나은행) 명칭 추가 |
| 약관, 약관서 내 타 약관, 약관서명 |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|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구 하나은행)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| 합병으로 인한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 |

2. 개정 시행일 : 2015년 9월 1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: 적용

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합병에 따른 단순한 은행명 변경으로 고객의 권리의무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기 거래고객에 대하여도 시행일 이후 적용